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공고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시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정 읍 시 장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 사업기간 : 2026. 2. ~ 12.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 예산규모 : 30,000천원 【재원 :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 지원내용 : 세무사 이용 수수료 지원 (대표자 1인, 年 최대 30만원)
 -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등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행 수수료

※ 2026년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

○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자격요건	확인사항
①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연 매출 3억원 이하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초기 청년 창업가	(연령) '25.12.31. 기준 18세~45세 이하(1980.1.1. ~2007.12.31.) (창업기간)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 지원 제외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붙임1 참조】

* 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그 밖에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방문 판매업 등 무점포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II 신청 방법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접수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출서류 : 총 5종

- | | |
|--|----------|
| ① 지원신청서 【붙임2 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
| ③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
| ④ (일반사업자인 경우)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 (면세사업자인 경우)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 ⑤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26.1.1. 이후 발급분) | |

- 지원 시기 : 신청접수 후, 익월 초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처리

III 유의사항 및 주요 FAQ

- 대표자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신청 불가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자에 대하여만 신청
- 공동대표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나머지 대표의 위임 필요_신분증 & 도장날인서명)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정읍시 내·외부 업체 모두 가능
- '26. 1. 1. 이후 지출된 세무사 이용 수수료가
└ 30만원 이상일 경우 → 30만원 지급
└ 30만원 미만일 경우 → 수수료 금액만큼만 실비 지급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처리

문 의 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8

표준산업분류	업종
35114	태양광발전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품소매
4791	통신 판매업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홍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지원신청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정읍시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업체현황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종목	
	소재지	정읍시				
	개업일자		2025년도 매출액		원	

◎ 위임자는 신청인에게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지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 신청인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전체 동의함 ☐ 전체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출 첨부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지급 및 확인 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계좌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공개에 동의한 날로부터 3년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초본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